근로기준법(근로시간)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

❖ '18.7월 **근로시간** 관련 **개정「근로기준법」 적용**에 따른 **(표준)학습근로계약서 활용시 유의사항 및 조치사항**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
1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

○ 근로시간은 1일 8시간, 1주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주간에 12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**(주당 최대 52시간)**

* 적용시기 : 300인 이상 및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 등('18.7.1), 50~300인 미만('20.1.1), 5~50인('21.7.1)

○ **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**의 경우 근로시간은 **1일 7시간, 1주간 35시간** 초과 불가, 당사자 합의로 **1일 1시간, 1주 5시간 한도 연장** 가능

* 적용시기 : 모든 사업장('18.7.1)

2 학습기업 유의사항

○ 「근로기준법」에 미달하는 근로계약(근로시간 등)은 **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무효가 되며,** 무효 부분에 대해서는 「근로기준법」이 적용됨

○ 따라서 **(표준)학습근로계약서 제7조제2항은 무효가 되며,**

- **과거 (표준)학습근로계약서를 활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습기업이** 18세 미만 근로자에게 1주 35시간(당사자 합의시 최대 40시간)을 초과하여 학습근로를 시키는 경우 **법 위반이 됨**에 유의

* 단,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재학생은 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미성년자(19세 미만)도 1주 35시간 적용(당사자 합의시 최대 40시간)

➡ 학습기업들은 필요시 ①학습근로계약 변경 체결 등 조치를 취하고 ②향후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있어 학습근로계약서(제7조제2항) 변경·활용

➡ 아울러 ③학습근로시간 관리시에도 근로시간 단축에 유념

참고 표준훈련근로계약서 제7조 제2항

현행	제7조(훈련근로시간과 휴식) ② 18세 미만인 학습근로자의 훈련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, **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**. 다만, 훈련기업과 학습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, **1주일에 6시간 한도**로 연장할 수 있다.

↓ **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무효화('18.7월~)**

개선	제7조(훈련근로시간과 휴식) ② 18세 미만인 학습근로자의 훈련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, **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**. 다만, 훈련기업과 학습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, **1주일에 5시간 한도**로 연장할 수 있다.